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502
----------	-----

발의년월일 : 1998. 9. 15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개정이유

- 정부의 행정구조조정·개편지침에 의거 '98.9.1 일자로 고성군 행정기구가 개편(실과·사업소 명칭변경 및 부분 통폐합 등)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새로 개편된 행정기구와 일치시켜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하고져 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을 명시(제3조제2항)
 - 당초 : 2실, 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
 - 변경 : 1실, 10과, 2직속기관, 2사업소

상임위원회별 조정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총 무 위 원 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 관리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역협력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과, 산업과, 축산과 경제통상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 개발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환경녹지과, 경제통상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 농업기술, 축산) 위생환경사업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3. 참고사항

-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역협력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과, 경제통상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 농업기술, 축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